

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

제정	2000. 6. 19	조례 제 269호
개정	2004. 2. 27	조례 제 502호
	2005. 10. 5	조례 제 610호
	2005. 12. 31	조례 제 784호
	2008. 10. 8	조례 제 957호(법무행정 처리 조례)
일부개정	2021. 12. 31	조례 제2228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08. 10. 8, 2021. 12. 31>

제2조(감사청구 주민 수) 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인 이상이어야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05. 12. 31, 2008. 10. 8, 2021. 12. 31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4. 2. 27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610호>

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2. 31 조례 제78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10. 8 조례 제957호, 법무행정 처리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13조의4”를 “「지방자치

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

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16조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법 제13조의4”를 “법 제16조”로 한다.

② 부터 ⑫ 까지 생략

부칙 <2021. 12. 31 조례 제2228호>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